

의안번호	2211232
의 퇴 인	김석기의원
회 답 일	2025.8.11.
추계번호	25D3548

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,500만원(연평균 500만원)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 (안 제13조제4항 신설)	5	5	5	5	5	25	5

주: 1.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(안 제13조제4항 신설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 2. 본 추계에서는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 두는 경우 1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연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3.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제1항 (국가의 보조)	국가는 가뭄·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 정비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3조제4항 (국가의 보조) 신설	가뭄·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 정비 등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3조제1항 (국가의 보조)	X	기존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개정안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2	안 제13조제4항 (국가의 보조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(안 제13조제4항 신설)에 한하여 추계하기로 함
 - 행정안전부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를 가정하여 추계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본 추계에서는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, 회의참석수당을 곱하여 산출
 - 본 추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유사 사례인 ‘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’의 2024년 예산 편성안을 참고하여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하고, 연간 2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회의참석수당은 25만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500만원으로 추정
 -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은 매년 500만원(=민간위원 10명×연간 2회 개최×회의참석수당 25만원)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고,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에 10명의 민간위원 위촉 등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